

## 제 9 장 통신

### 제 9.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기업에게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또는
  -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서비스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 제 9.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 제 1 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 제 9.3 조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나.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국경 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접속하거나,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
  - 라. 교환 · 신호 · 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 마.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당사자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 보장, 그리고
  -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
-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 장비를 그려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 제 2 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 제 9.4 조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한 의무<sup>25</sup>

##### 상호 접속

###### 1. 각 당사국은

- 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서 상호 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 접속의 요율과 조건은 일반적으로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 공급자간의 상업적 협상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 번호이동성

######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동등 다이얼

######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일한 범주의 서비스 내에서 동등 다이얼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질 것, 그리고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이 부여될 것

<sup>25</sup> 이 조는 부속서 9-가를 조건으로 한다.

**제 3 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sup>26</sup>**

**제 9.5 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자회사, 계열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 가.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요율 또는 품질, 그리고
  -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제 9.6 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 라. 약탈적 가격 책정을 포함하여,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

**제 9.7 조**  
**재판매**

1. 그러한 조건 또는 제한이 반경쟁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자신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

<sup>26</sup> 이 절은 부속서 9-나를 조건으로 한다.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이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로 제공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재판매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그러한 서비스가 합리적인 요율로 재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도록 보장한다.<sup>27</sup>

### 제 9.8 조 망 요소 세분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세분화에 기초하여,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게 부여한다.

### 제 9.9 조 상호접속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 나.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 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상호접속을 하고자 하는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

<sup>27</sup> 제2항의 목적상,

- 가. 당사국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합리적인 요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 나.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설정된 도매요율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들의 설비와 장비를 다음 선택권 중 최소한 하나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와 상호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sup>28</sup>

가.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다른 표준상호접속제안

나. 기존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또는

다.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을 통하여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가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상호접속협정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제2항가호에 따라 상호접속이 제공되는 경우 요율 및 조건이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 제 9.10 조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책정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요율로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원가지향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부여한다.

### 제 9.11 조 설비 병설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가능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

---

<sup>28</sup> 호주의 경우, 이러한 선택권은 중재를 포함한다.

적인 요율로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의 어느 구역이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

### 제 9.12 조 통신 설비에 대한 접근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 관로, 도관, 선로설치권, 그리고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전주, 관로, 도관, 선로 설치권,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결정할 수 있다.

### 제 4 절 그 밖의 조치

### 제 9.13 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자국 영역에 공급자가 소재한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의 해저케이블 시스템(육양 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접근<sup>29</sup>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 제 9.14 조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서비스 공급자로서 그 공급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sup>29</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 가. 해저 케이블 육양 설비에 대한 접근은 용량을 조건으로 하며,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접근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허가된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임차된 설비, 또는 그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통한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 나. 그러한 서비스 요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 다. 그러한 서비스의 요율표를 제출할 것
  -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 마. 공중 통신 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기술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 9.15 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서비스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독립적일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지분<sup>30</sup>을 소유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sup>31</sup>에 대하여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 제 9.16 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제 9.17 조 허가 절차

- 1. 당사국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

<sup>30</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통신규제기관 이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sup>3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 참여자”라는 용어는 그 통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할 때,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 취소 · 갱신 거부 또는 조건 부과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 9.18 조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 ·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되거나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7.4조(시장접근)가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7.1조(적용범위)의 운영을 통하여 제11장(투자)에 적용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제7.4조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의 사용과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공익을 고려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비정부 통신 서비스용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도록 노력하고, 당사국이 행정적 유인 가격책정, 경매 또는 비면허 사용에 의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장려할 수 있음을 인정하도록 노력한다.

### 제 9.19 조 집행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게 제9.3조부터 제9.13조까지의 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 그러한 권한은 금전적 벌칙, 구제명령(잠정적 또는 최종적), 시정 명령이나 허가의 수정 ·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거나

나 행정 또는 사법기관을 통하여 부과하려는 능력을 포함한다.

### 제 9.20 조 통신 분쟁의 해결

제19.3조(행정절차) 및 제19.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구제신청

- 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제9.3조부터 제9.13조까지의 사안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시의적절하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나.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사법적 재심

- 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는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 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달리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적 재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 9.21 조 투명성

제19.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제 결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달리 공개되도록 할 것
- 나.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 1)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 2)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3)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 4) 통보, 협약,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 5)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또는 표준에 관한 조치의 개정 및 채택, 그리고
  - 6) 사법적 또는 행정적 재심에 관한 절차, 그리고
- 다.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대하여, 제9.9조, 제9.11조 및 제9.12조에 명시된 종류의 접근을 거부하는 모든 결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

### 제 9.22 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sup>32</sup>

1. 어떠한 당사국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sup>33</sup>.

### 제 9.23 조 업계와의 협의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 영역에 있는 모든 통신 산업 종사자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통신 정책, 규정 및 표준의 개발에 있어 자국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협의를 촉진한다.

---

<sup>3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을 제외하고, 이 조는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채택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up>3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 가. 당사국은 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보유하며,
- 나. 그러한 조치가 관련 국제 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반박이 가능하다.

## 제 9.24 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양 당사국은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 제 9.25 조 통신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 목적상,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되는 통신 위원회는 통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점검한다. 그리고

나. 이 장에 관련된 모든 사안과 양 당사국의 통신 분야와 관련되는 그 밖의 사안을 논의한다.

3.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더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논의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4.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회합한다.

5. 양 당사국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민간 영역의 관련 기관 대표를 포함하여, 논의될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양 당사국의 정부가 아닌 관련 기관의 대표를 위원회 회합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 제 5 절 정의

### 제 9.26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물리적) 설비 병설이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구역에서 장비를 설치 · 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말한다.

상용 이동 서비스란 이동무선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동등** **다이얼**이란, 최종이용자가 선택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관계없이, 그리고 비합리적인 다이얼의 자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유형의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동등한 자리수를 사용할 수 있는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 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요소**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이용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동일한 유형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 바꿀 때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란 공중 통신 망, 또는 공중 통신 서비스, 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를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12호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 호주의 경우, 이는 공급자가 형식이나 내용을 제고함으로써 또는 저장이나 복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정보에 “가치를 더하는”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부속서 9-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한국

제9.4조제3항은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속서 9-나

### 제3절의 예외: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지배적 공급자에 관한 추가 의무

#### 한국

1.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별정통신 사업자인 한도에서, 지배적 공급자는 제9.8조, 제9.9조제1항가호, 제9.9조제1항마호, 제9.11조 및 제9.12조에 명시된 의무의 적용에서 면제된다.
2. 제9.9조제1항나호, 제9.9조제1항라호 및 제9.10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요율 및 조건에 비하여 차별적인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제9.20조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는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3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는 유선이나 무선 또는 다른 전송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를 소유할 수 있으며, 허가된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송 설비를 통하여 자신의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허가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이다.
4. 지배적 사업자는, 그들이 상용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도에서, 제9.5조, 제9.7조, 제9.8조, 그리고 제9.10조, 제9.11조 및 제9.12조에 명시된 의무의 적용에서 면제된다.